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3.06.05

개정 2016.07.25

KCLAVIS®

(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제 1 편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업무 위탁시 투자권유 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2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상품

다.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제 3 조 (투자권유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해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편 투자자의 구분 등

제 4 조 (방문목적의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반·전문투자자의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6 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별지 제3호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서)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 적정성 원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 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 8 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 제1호)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2호 참조) 분류된 투자성향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절차를 따른다.
5. 제1항부터 제3항은 금융투자업규정의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여부와 상관없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 9 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 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6호, 제 4-93조 22호)

제 3 편 투자권유

제 10 조 (투자권유의 절차)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원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 참조)

제 11 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판단 기준(별지 제1호 및 별지 제 1-2호)와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권유하는 행위
5.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금전의 대어나 그 중개 및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 4 편 설명의무

제 13 조 (설명 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 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서명, 전화/전신/모사 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제 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5 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1-4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가. 정량적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제외)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6 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등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8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에 한하여)
- 아.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조 각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 가. 제1항 각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19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또는 위탁을 받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20 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 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1-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 계약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전문투자자에 대한 특칙)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운용지침에 따라 투자자유형을 분류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회사가 투자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류한다.

부칙 (2013.06.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06.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07.25일부터 시행한다.

KCLAVIS®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개인)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	--------------------------------

□ 등록정보 구분

<input type="checkbox"/>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또는 정보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 정보와 동일
---	------------------------------------

□ PART 1) 등록정보 구분

연 령 (개인)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39세 <input type="checkbox"/> 40세~49세 <input type="checkbox"/> 50세~59세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순자산규모 (법인)	<input type="checkbox"/> 1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이상
연소득 (개인)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초과	당기순이익 (법인)	<input type="checkbox"/> 1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이상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매우낮은수준) <input type="checkbox"/>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낮은수준) <input type="checkbox"/> 주식,채권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높은수준)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 (매우높음)		
투자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 1년 <input type="checkbox"/> 1년 ~ 2년 <input type="checkbox"/> 2년 ~ 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3년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5년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비중	<input type="checkbox"/> 5%이하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2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초과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 손실만 감수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다.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중복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용거래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PART II) 투자자성향 (고객본인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 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투자자 유형분류(투자자정보 항목을 토대로 계량화되어 분류) - 권유자 체크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	--------------------------------	--------------------------------	--------------------------------	--------------------------------

※ 53점 총점기준

(43점 이상 공격투자형 / 32점~42점 적극투자형 / 22점~31점 위험중립형 / 11점~21점 안정추구형 / 0점~10점 안정형)

✓ 주식 투자권유 희망여부

동의

※ 계량화한 투자유형이 고객선택 투자자성향과 다르거나, 위험 중립형 이하가 나왔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본인의 투자성향이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 불가 등급(위험중립형 이하)이라도 투자권유를 희망하며, 주식의 투자위험도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및 그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수함.

PART Ⅲ) 세부자산배분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형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성장성과 경쟁력, 저평가를 핵심 기준으로 선정한 Good Quality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 ※ 초고위험 주식(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제한
<input type="checkbox"/> 일반형	투자위험등급 : 1등급(초고위험)	성장성과 경쟁력, 저평가를 핵심 기준으로 선정한 Good Quality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
<input type="checkbox"/> 룡숫형	투자위험등급 : 1등급(초고위험)	펀더멘탈 분석과 퀀트 스크리닝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저평가 된 주식을 Long, 고평가된 주식을 short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판단을 통한 투자

PART Ⅳ) 취약금융투자자 해당여부

<p>본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따른 적합한 계약여부를 확인하고, 취약금융 소비자에게 손실 위험 등 상품(투자일임계약) 설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고령층(만 65세이상)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input type="checkbox"/> 문맹자 등 <input type="checkbox"/> 취약 금융소비자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인거부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규준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며,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p>
--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취약 금융소비자 해당시)

<p>1.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습시다)</p> <p>2.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 받았습시다.)</p>	<p>서명/인</p>
<p>20 년 월 일</p>	<p>투자자의 성명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p>
	<p>서명/인)</p>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구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문항 1	(개인)	4	4	3	2	1	
	(법인)	1	2	3	4	4	
문항 2	(개인)	1	2	3	4	4	
	(법인)	1	2	3	4	4	
문항 3		1	2	3	4		
문항 4		1	2	3	4	5	
문항 5		1	2	3	4	5	
문항 6		5	4	3	2	1	1
문항 7		3	2	1			
문항 8		-2	2	4	6		
문항 9		1	2	3	4	5	
문항 10		4	3	2	1		

※ 문항9) 중복응답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계산

□ 점수계산 방법

문항 1 ~ 문항 10의 응답결과에 따라 합산한 점수 (총점 53점)을 100점으로 환산

Ex) 합산 점수가 40점인 경우 $40\text{점}/53\text{점} * 100 = 75\text{점}$

□ 투자성향 분류

점수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다만 문항2에서 답변이 1 또는 2 이하인 경우 적극투자형 이상의 점수에도 불구하고 위험중립형으로 분류

- ✓ 안 정 형 : 20점 이하 (총점기준 11점 미만)
- ✓ 안정추구형 : 20점 초과 40점 이하 (총점기준 11~21점)
- ✓ 위험중립형 : 40점 초과 60점 이하 (총점기준 22~31점)
- ✓ 적극투자형 : 60점 초과 80점 이하 (총점기준 32~42점)
- ✓ 공격투자형 : 80점 초과 (총점기준 43점 이상)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정형	투자권유 불가능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투자 권유 가능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권	투기등급 회사채 (BB이하) 포함		회사채 (BBB+ ~ 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특수채
파생결합 증권	ELS/DLS	원금 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	원금보장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그외주식	헷지된 주식형	
선물, 옵션, ETF	선물, 옵션 레버리지 ETF		선물(헷지목적에 한함) ETF, 옵션 매수		

(별지 제 4 호)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_____) 형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상품명 : _____

위험 등급 : _____ 등급

KCLAVIS®

20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70세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권유 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원(해당 본부장 또는 준법감시 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을 중단하고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령투자자 보호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2.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마케팅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